

《 적합성확인제도 질의답변집 안내사항 》

적합성확인제도 질의답변집은 설명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질의에 대해 검토·답변한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적합성확인 신청 준비와 허가기관 담당자로서 제도 운영 시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질의답변집 내 질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집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나 문의할 사항이 질의답변집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질의응답 자료

구 분	질의응답	Page
대상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적합성확인 대상인지?	2
	2. 사후관리 매립장도 적합성확인 대상인지?	3
유효 기간	1. 유효기간 연장 사유인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경우의 판단 시점은?	4
	2. 하나의 사업장 부지 내 여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5
	3.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휴업중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시점은?	6
	4.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영업정지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시점은?	7
	5. 통합관리사업장의 적합성확인의 신청시점은?	8
	6. 양도·양수 허가 시 적합성확인의 신청시점은?	10
신청	1. 허가일자가 다른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 여부?	11
	2. 업종이 같고 허가일자가 다른 2개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 여부?	12
	3.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장도 적합성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13
	4. 의제처리 대상 사업장의 신청시점은?	14
	5. 동일한 사업부지에 업종이 같은 의제처리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이 같이 있는 경우 신청 시점과 신청기관은?	15
	6.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에 적합성확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과 처리절차는?	16
검토	1. 법 위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적책임 이행 요건의 검토 방법은?	17
	2. 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이행의 기준 시점은?	18
	3.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의 변경으로 허가기준을 미달 시 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 방법은?	19
	4. 시설·장비 기준의 충족여부 검토를 갈음하는 정기검사결과서를 대신하여 설치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지?	20

[적합성확인 대상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적합성확인 대상인지?

□ 사 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A업체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 건설폐재류(91-11-00),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콘크리트(51-22-01) 등을 허가받아 영업하는 경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임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있더라도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른 업종과 영업 내용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함

□ 사 례

-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을 관리하는 B업체도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매립시설 사용종료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지 않는 B업체는 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님

[유효기간 관련]

1

유효기간 연장 사유인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경우의 판단 시점은?

□ 사 례

- A업체의 유효기간은 2020.7.1.~2025.6.30.인데 2020.4.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020.6.9. 3개월(2020.6.10.~2020.9.9.)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되는지?
 - 이 업체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청하여 2020.7.10.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 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은 처분일자, 과징금은 부과일자, 벌금 이상 형은 1차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함
- 따라서, A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유효기간 연장의 판단시점은 2020.6.9.로 유효기간 내 또 다른 행정처분 등이 없다면 유효기간은 2년 연장됨
 - 그러나, A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전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신청하여 부과된 경우라면 유효기간 2년 연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 례

- A업체는 사업장부지 내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 (업종)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따라서, 업종을 달리하는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은 각각의 허가일자에 맞춰 유효기간이 산정됨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휴업중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시점은?

□ 사 례

- A업체는 경영상 이유로 2025.1.1.부터 2025.12.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인 상태인데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6.30.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은 언제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마친 처리업자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휴업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 처리업자가 재개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정함
- 따라서, A업체가 2026.1.2. 재개업 신고를 하여 수리되는 경우에는 2026.4.2.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영업정지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시점은?

□ 사 례

-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2025.4.1.부터 2025.9.31.까지 6개월 영업정지 상태인데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6.30.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은 언제하여야 하는 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따라서, 영업은 정지중이나 폐기물처리업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맞춰 적합성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사 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면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인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은 언제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행정처분 등이 없는 경우 2년 연장함
 -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봄
-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조건 등 검토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검토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조건 등 검토일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일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검토일이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이전이거나 이후인 경우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다만,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일(5년) 이전에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조건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맞춰 적합성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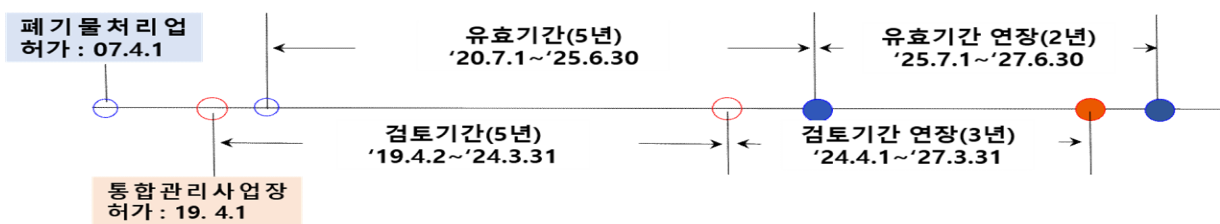
붙임

통합관리사업장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5년) 이전에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조건 등 검토일이 있는 경우

- 검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일
※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 후 만료일
- 검토기간이 연장된 경우 : 검토일
※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검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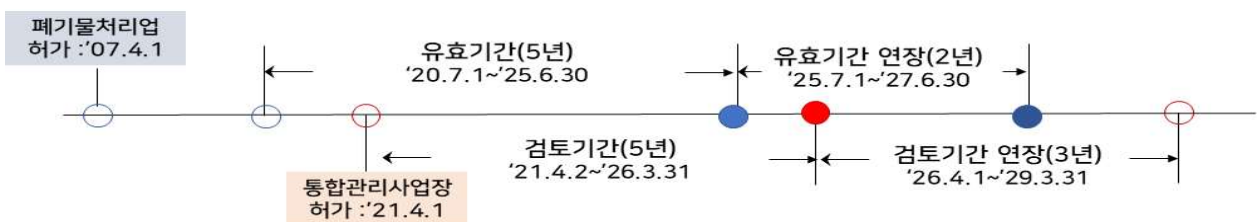
☞ 예시



2.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5년) 이후에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조건 등 검토일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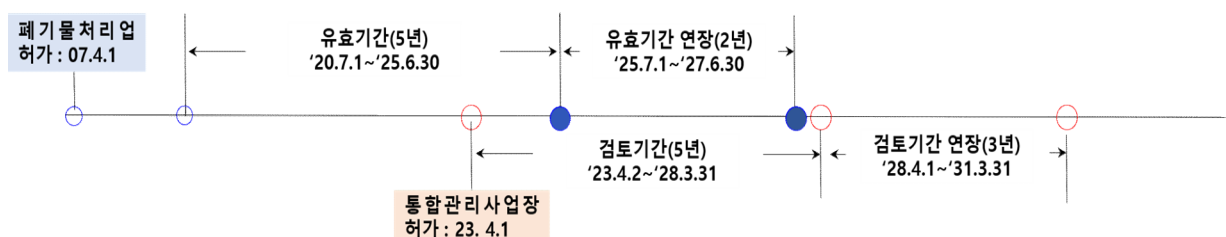
- 검토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 검토일
- 검토기간이 연장되어 검토일이 유효기간 연장 만료일 이후인 경우 :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일

☞ 예시



3.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통합관리사업장 검토일 이전인 경우 : 유효기간의 만료일 ※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 후 만료일

☞ 예시



□ 사 례

- 종합재활용업인 A업체는 2004.7.1. 허가를 받고 운영중 2021.8.1. 개인사업자인 B가 A업체 대표인 개인사업자 C에게 양도양수하고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시점은 언제 인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기준 충족, △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이행,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결격사유 미 해당

- 또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관은 △중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책임 이행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함
- 따라서, 양도·양수허가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허가일자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함
 - 다만, 법 개정* 이전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와 상속에 따라 승계를 한 경우에는 양도인 등 이전 사업자의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됨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일부개정('19.11.26개정, '20.5.27 시행) : 양도양수 등 신고제 → 허가제

[적합성확인 신청 관련]

1

허가일자가 다른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 여부?

□ 사 례

- A업체는 허가일자가 다른 수집운반업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영위하는 중 하나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려 하는 데 가능한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2개 이상 업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5년의 만료시점에 적합성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적합성확인을 받고자 하는 2개 업종이 유효기간 5년을 경과한 경우, 빠른 날짜의 업종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함
- ※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업종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른 업종에 맞춰 신청 불가

업종이 같고 허가일자가 다른 2개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 여부?

□ 사 례

- B업체는 허가일자가 다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중 하나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 확인을 신청하려 하는 데 가능한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업종)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따라서, 업종이 동일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둘 중 빠른 날짜의 허가에 맞춰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함

□ 사 례

-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C업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효기간 이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2개 이상 업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5년의 만료시점에 적합성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C업체가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유효기간 5년의 만료시점에 적합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과 맞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이전에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중 임의의 날짜에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업종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른 업종에 맞춰 신청 불가

□ 사 례

-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D업체가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일자가 다른 경우 적합성확인은 언제 신청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중 지정폐기물 허가일자와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일자가 다른 경우 지정폐기물 허가일자를 해당 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최초 유효기간 산정기준으로 적용함
- 또한,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효기간 만료일이 상이하게 된 경우 우선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해당 처리업자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봄
-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별 허가일자가 다른 의제처리대상 사업장의 적합성확인 신청은 지정폐기물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전까지 신청하며
- 일부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별 유효기간의 만료일중 빠른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 신청은 모두 지정폐기물 허가기관(지방 환경청)에만 신청하면 됨

동일한 사업부지에 업종이 같은 의제처리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이 같이 있는 경우 신청 시점과 신청기관은?

□ 사 례

-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E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 2개의 재활용 시설은 갖추고 1개의 시설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다른 1개의 시설은 사업장일반폐기물만 재활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만 재활용하는 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어떤 허가기관에 언제 신청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의제처리대상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허가기관에 지정폐기물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E업체가 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사항이 2개의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허가로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을 의제처리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신청하고(신청 - 질의 4 참조)
 - 시설별로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은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기관에 사업장일반폐기물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 다만, E업체가 시설별로 별도 허가를 받았으나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 중 빠른 날짜의 허가에 맞춰 지정폐기물 허가기관(지방환경청)에 적합성확인 신청 가능함(신청 - 질의 2 참조)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에 적합성확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과 처리절차는?

□ 사 례

-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F업체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5.6.30.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5.5.1. 적합성확인 신청을 한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허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적합성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조 제4항에는 적합성확인 만료일까지 적합성확인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일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정함
 - 한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미신청 시 벌칙 등 제재조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F업체가 적합성확인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으며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에서는 적합성확인 검토 후 결과 통보를 하게 됨
 - 다만, 같은 법 제25조3제6항 및 제2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

[적합성확인 검토 관련]

1

법 위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적책임 이행
요건의 검토 방법은?

□ 사 례

- 폐기물처리업 A업체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법 위반에 따라 조치한 개선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적합성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는지?

※ 소송은 항소 등으로 수년간 진행될 예정임

□ 답 변

- 적합성확인 검토 조건 중 일부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적합성확인 검토기간 내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적합성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허가증에 적합성 확인 결과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 확정 시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적합성확인은 보류함을 기재하여 통보
 -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허가증에 적합성 확인 결과와 사유 기재 후 허가 취소 진행
- 차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 (업체가 승소하는 경우) 허가증 상 보류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함을 기재 ※ 유효기간에는 영향 없음
 - (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보완 요구 ⇒ △(보완) 허가증 상 보류사항에 대해 적합성 갖춘 것으로 확인함을 기재, △(미 보완시)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 ⇒ 허가증에 적합성 확인 결과와 사유 기재 후 허가 취소 진행

2

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이행의 기준 시점은?

□ 사 례

- 폐기물처리업 B업체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6.30.로 2025.3.30. 적합성확인을 신청하였는 데, 2025.4.20.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납부기한은 2025.7.20) 법적책임 이행 여부를 어느 시점에 맞춰 검토하여야 하는지?
- 이 업체가 6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법적책임 이행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 유효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라 5년으로 하고 행정처분 등이 없는 경우 2년 연장함
- 따라서, 적합성 요건 “법적책임 이행”의 판단시점은 유효기간 기산일로부터 만료일 내에 법적책임을 이행하도록 부여받은 기한임
- B업체의 과징금 납부기한이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라면 해당 과징금의 납부 여부는 법적책임 이행 여부의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할과징금의 납부 여부가 검토대상임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의 변경으로 허가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 방법은?

□ 사 례

- 2012.1.2. 덤프트럭 1대, 밀폐식 운반차량 1대를 갖추어 적정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C업체는 현재의 허가기준을 미달하는 데 적합성확인 과정에서 허가기준 충족 여부는 어떻게 검토되는 지?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별표 7) 고체상태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있으며

※ (예시) 부칙(환경부령 제589호, 2014.12.31.) 제2조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교체 시 변경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함

- 같은 법 제25조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유지를 정함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는 제도임
- 따라서, B업체에 대한 적합성확인 과정에서 허가기준 충족 여부는 일정한 사유 발생 여부, 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 처리 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이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함

시설·장비 기준의 충족여부 검토를 갈음하는 정기검사결과서를 대신하여 설치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지?

□ 사 례

- 소각열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재활용업 D업체에서 최근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결과서를 대신하여 설치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도 시설·장비 기준의 충족여부 검토를 갈음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검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따라서, 설치검사 결과서도 설치검사를 통해 검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의 충족여부 검토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임

※ 적합성 확인기관은 해당 업체를 검사한 기관을 통해 검사한 시설내역 확인